

항 소 장

원심 사건번호 서울지방법원 2000 가소 243369 손해배상(기)

원 고 (항소인) 강 승 원 외 69 (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)

소송대리인 변호사 하 승 수

피 고 (피항소인) 한국전기통신공사

대표자 사장 이 계 철

위 당사자 간의 서울지방법원 2000가소 243369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에서 2001. 6. 19.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, 원고들은 불복이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.

원판결 주문의 표시

1.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.

(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판결을 2001. 7. 24. 송달받았습니다)

항 소 취 지

1. 원 판결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4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4.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항 소 이 유

추후 제출하겠습니다.

첨 부 서 류

- | | |
|-----------|----|
| 1. 항소장 부분 | 1통 |
| 1. 위임장 | 1통 |
| 1. 납부서 | 1통 |

2001. 8.

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

변호사 하 승 수

서울지방법원 귀중